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036호 2014. 7.2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30호 보상계획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41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8

기 타(고시)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고시 제1호 신현시장재건축사업 이전고시 --------- 19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보도진로 62-12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7. 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7-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가좌동 173-463, 173-471	보도진로 62-12	2009-08-28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 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2	인천 서구 가좌동 173-468	보도진로 62-10	2009-08-28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 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3	인천 서구 가좌동 173-464, 173-472	보도진로 62-11	2009-08-28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 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4	인천 서구 가좌동 173-321	보도진로 62	2009-08-28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 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5	인천 서구 가좌동 173-469	보도진로 62-9	2009-08-28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 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6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2지구 2블럭 2로트	경서로 29	2009-08-28	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	
7	인천 서구 경서동 976-62	푸른로7번길 2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연희동 778-18	담지로104번길 23	2011-02-14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9	인천 서구 경서동 950-15	크리스탈로 84	2010-11-05	크리스탈공원의 공원명 반영	
10	인천 서구 오류동 1548-4, 1548-9	갑문2로 39	2012-10-25	갑문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오류동 1579-2, 1579-3, 1579-4, 1579-5	정서진로 117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12	인천 서구 오류동 1548-5, 1548-8	갑문2로 43	2012-10-25	갑문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불로동 247-38	고산후로 288-69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7-21 11:41:0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7.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보도진로 62외 9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7-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가좌동 173-321	보도진로 62	2014-07-09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경서동 산165-13	경서로 27	2014-07-09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연희동 689	승학로 306	2014-07-09	건축물 멸실	
4	인천 서구 왕길동 468	단봉로85번안길 14	2014-07-18	건물말소	
5	인천 서구 왕길동 426-4	단봉로85번길 26	2014-07-18	건물말소	
6	인천 서구 왕길동 394-3	검단로348번길 1	2014-07-18	건물말소	
7	인천 서구 왕길동 389-3	단봉로85번길 35-1	2014-07-18	건물말소	
8	인천 서구 왕길동 332-6	단봉로85번길 39-23	2014-07-18	건물말소	
9	인천 서구 오류동 802-3	검단로250번길 1-3	2014-07-18	건물말소	
10	인천 서구 왕길동 562-15	검단로250번길 1-16	2014-07-18	건물말소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7-21 11:41:5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30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 7 . 17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공사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2014. 5. ~ 2014.12.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번지 일원	L= 231m B= 6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14. 7. 17. ~ 2014. 7. 31. (14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GB관리팀(☎560-4684)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 13필지 2,090㎡

위 치	지 번
인천 서구 공촌동	47-35, 산38-2, 47-10, 40, 41-1, 40-2, 산41-2, 산41-1, 18-1, 20, 산42-3, 11-20, 18-7

○ 지 장 물 : 공촌동 47-10, 40, 40-2, 18-1번지 비닐하우스 및 수목 등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96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이후 18년간 동결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심화 및 2013. 9월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현실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 재산정

※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25) 또는 Fax(560-276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5조 규정”을 “제45조”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45조 규정”을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법 제45조 규정”을 “법 제45조”로,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그달”을 “그 달”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80조 규정”을 “법 제80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용 량	요 금(원)	비 고
분 뇨		10리터당	401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기 본	750리터까지	21,053	
	추 가	100리터당	1,6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훈 령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2. 제정이유

○ 구민 또는 기업이 규제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안 제2조)

○ 헌장의 내용[별표] (안 제5조)

○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안 제10조)

○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안 제11조)

○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 법무팀)에게 제출바랍니다.

[주소: 404-701 인천광역시 서곶로 307, ☎ 560-4062, FAX 560-270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 붙임

【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기업·구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구민·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민 및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

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전 공무원은 구민 및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구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정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3.8.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41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부과 규정에 의하여 부과 후 미납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

위 치	행위자 (토지소유자)	위 반 사 항	반송주소
가정동 산29-1	김○근	○ 건축물 무단축조 (컨테이너 2동/사무실 등/54㎡)	주거지 : 인천 서구 가정동 441 사업장 : 인천 서구 가정동 산29-1

4. 공고기간 : 2014. 07. 18 ~ 2014. 08. 01(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GB관리팀(☎032-560-4683)

2014. 7.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고시 제1호

신현시장재건축사업 이전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12.1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8-38호(2008.09.04.),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및《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63호(2009.10.22.),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58호(2012.08.21.),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63호(2014.05.02.),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준공인가》된『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사항을 이행하고 같은법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이를 분양받을자에게 통지하고, 같은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전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 사본은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 032-581-4994)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일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고시 내용 -

1. 재건축정비사업의 명칭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 (확정예정지번: 신현동 303)
   2) 면적 : 3,104.70㎡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칭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민순)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72(신현동)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09. 10. 21.
5. 준공인가일 : 2014. 4. 30.
6. 이전고시 내역

(1) 토지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택지	신현동 303	대	3,104.70	일반APT,근린생활시설
합 계			3,104.70	

(2) 건축시설

° 주택,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5~지상18층 1개동
- 아파트 7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105개호
- 연면적 : 26,638.5127㎡

7. 관계서류 열람장소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32-581-4994)